

#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38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1월 28일

발 의 자 :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

## 1. 주 문

-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 검토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취하여 시민생활 편의추구와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성된 「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」의 활동기간을 2019. 12. 31.까지 연장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, 자치법규 정비 등의 조사활동 및 세부적인 조례검토 기간이 촉박하여 심도 있는 조례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관련법규

- 나.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- 다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- 라.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 구성)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지방자치법

#### ○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,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